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시 정원 일부의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7명(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나노팹센터 구축·운영

제10조제15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검사”
를 “허가·신고·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108조제1항제4호
· 제8호·제9호·제17호”를 “제108조제1항제4호·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1
2호 중 “감독과 공동구축협회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검·관리”를 “감
독”으로 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고·검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조사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을 “학술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업무혁신 및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추진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를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
· 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
제21조제9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9호 중 “감독과 공동구축협회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검·관리”를 “감독”으로 한다.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
· 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 중 “2023년 12월 31

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강릉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전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24”를 “820”로 하고, 일반직 계 “815”을 “811”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8”을 “6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94”를 “292”로,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31”을 “23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1”을 “6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24”를 “820”로 하고, 일반직 계 “815”을 “811”로 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8”을 “69”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23”를 “321”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02”을 “201”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1”을 “60”으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

기보·임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90”을 “187”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4”를 “5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1”을 “3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0”을 “187”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2”를 “5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1”을 “3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68”을 “8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68”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4”를 “6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1”을 “19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0”을 “211”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3”을 “212”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2”를 “34”로 하며, 통신운영주사보 “9”를 “6”으로 하고, 통신운영서기 “2”를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865”를 “857”로 하고, 일반직 계 “865”를 “85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70”을 “6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8”을 “19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를 “213”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0”을 “209”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0”을 “32”로 하며, 통신운영주사보 “9”를 “6”으로 하고, 통신운영서기 “2”를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2)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	1명 (4급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3) 네트워크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4)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기반안전과	1명 (4급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5)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을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호, 제3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3. 제3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
·	·

5. 제3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0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주전파관리소의 관할 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⑧ (생 략)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u><신 설></u>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 -----. 1. ~ 25. (현행과 같음) <u>26. 나노랩센터 구축·운영</u>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⑭ (생 략) ⑮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u><신 설></u>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19. (현행과 같음) <u>20.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 업의 등록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사항</u>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 ⑤ (생 략)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전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u> 2. (생 략) 3. 삭 제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고·검사 등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 · 시행</u> 2. (현행과 같음)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
한 사항

5. 삭 제

6. ~ 8. (생 략)

9. 삭 제

10. ~ 16. (생 략)

17.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
4호·제8호·제9호·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11. 삭 제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
용실태의 감독과 공동구축협

4. -----
허가·신고·검사 -----

6. ~ 8.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17. ----- 제108조제1항제4
호·제17호 -----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
조사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
-----.

1. ~ 9. (현행과 같음)

12. -----
----- 감독

의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검·관리

13. ~ 16. (생략)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② (생략)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④ (생략)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⑤ (생략)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13. ~ 16.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업무혁신 및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추진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술활동-----

5.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7호까지

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 19. (생략)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1. ~ 23. (생략)

<신설>

<신설>

⑧ (생략)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5호-----.

1. ~ 19. (현행과 같음)

⑦ -----
-----.

-----.

1. ~ 23. (현행과 같음)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

<신 설>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울산 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 8. (생략)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과 공동구축협
의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
검·관리

10. (생략)

제33조(한시정원) 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

도의 측정·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

⑩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감독

10. (현행과 같음)

제33조(한시정원) <삭 제>

② -----

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 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u>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u>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둔다. ④ ~ ⑤ (생략)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③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24</u>	<u>820</u>	-4
·	·	·	
·	·	·	
일반직 계	<u>815</u>	<u>811</u>	-4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 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 사무관	<u>68</u>	<u>69</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	<u>294</u> .	<u>292</u> .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	<u>231</u> .	<u>230</u>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u>61</u> .	<u>60</u> .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 .	<u>13</u> . .	<u>12</u> . .	-1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24</u>	<u>820</u>	-4
·	·	·	
·	·	·	
일반직 계	<u>815</u>	<u>811</u>	-4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 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 사무관	<u>68</u>	<u>69</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	<u>323</u> .	<u>321</u> .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	<u>202</u> .	<u>201</u>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u>61</u> .	<u>60</u> .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 .	<u>13</u> . .	<u>12</u> . .	-1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0</u>	<u>187</u>	-3
일반직 계	<u>190</u>	<u>187</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공업연구사	<u>54</u>	<u>53</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1</u>	<u>30</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 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0</u>	<u>187</u>	-3
일반직 계	<u>190</u>	<u>187</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공업연구사	<u>52</u>	<u>51</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1</u>	<u>30</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 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8</u>	<u>860</u>	-8
일반직 계	<u>868</u>	<u>860</u>	-8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64</u>	<u>63</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201</u>	<u>199</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10</u>	<u>21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3</u>	<u>212</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 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2</u>	<u>34</u>	+2
·			
·			
통신운영주사보	<u>9</u>	<u>6</u>	-3
·			
통신운영서기	<u>2</u>	<u><삭제></u>	-2
·			
·			
열관리운영서기보	<u>3</u>	<u>1</u>	-2
·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5</u>	<u>857</u>	-8
일반직 계	<u>865</u>	<u>857</u>	-8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70</u>	<u>69</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98</u>	<u>196</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12</u>	<u>213</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0</u>	<u>209</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 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0</u>	<u>32</u>	+2
·			
·			
통신운영주사보	<u>9</u>	<u>6</u>	-3
·			
통신운영서기	<u>2</u>	<u><삭제></u>	-2
·			
·			
열관리운영서기보	<u>3</u>	<u>1</u>	-2
·			